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2. 12. 20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. 12. 5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. 12. 6
- 라. 상정일자 : 2002. 12. 20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세무과장 문철주)

가. 개정이유

- 규제개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 수수료의 폐지와 모호한 개념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요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의 폐지
(안 제3조제1항 별표 1<증명> 6호)

- 개념이 모호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요율기준 수정
(안 제3조제1항 별표 1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> 4호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검토내용은
 -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「증명」란의 「6호와 가목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」란을 삭제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법령에 근거없는 수수료의 징수는 부당하다는 지적통보에 따른 것이며
 - 또한 동 별표1 「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」란의 「4호 가목 개별공시지가확인원」란을 개정하는 것은 수수료 부과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요율기준을 현행 「1동 1년」을 「필지별, 년도별」로 조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한 것임.
 - 따라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및 소수의견 : 없었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29 호
의 결	2002. . .
년 월 일	(제 회)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2. 12. 7.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5

제출자 : 서산시장

1. 개정이유

- 규제개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 수수료의 폐지와 모호한 개념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요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의 폐지
(제3조 제1항 별표 1 <증명> 6호)
- 나. 개념이 모호한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요율기준 수정
(제3조 제1항 별표 1 <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> 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법령
 -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
 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
- 나. 입법예고 결과의견
 - 예고기간 : 2002. 10. 9 ~ 2002. 10. 28(20일간)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수수료명중 (증명) 6호를 삭제하고, 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 4호의 지적관계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 수 료 명	기 준	요 액	비 고
(인가, 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 등) 4. 지적관계 가. 개별공시지가확인서	필지별· 연도별	5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증명수수료요금표 신·구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수수료명	기준	요금	수수료명	기준	요금
(증명) 1~5(생략) 6. 회계에 관한 증명 가.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	1건	500원	(증명) 1~5(현행과 같음) <삭제>		
(인가, 허가, 신고 등록, 지정, 확인 등) 1~3(생략) 4. 지적관계 가. 개별공시지가확인원	1통(1년)	500원	(인가, 허가, 신고 등록, 지정, 확인 등) 1~3(현행과 같음) 4. 지적관계 가. 개별공시지가확인서	필지별· 연도별	500원
나~바(생략) 5~10(생략)			나~바(현행과 같음) 5~10(현행과 같음)		